

ESG위원회 운영규정

2023.12.21

주식회사 위메이드

목 차

제1장 총 칙

제1조 [목적]

제2조 [권한]

제2장 구 성

제3조 [위원회의 구성]

제4조 [위원장]

제5조 [워킹 그룹의 구성]

제3장 회 의

제6조 [종류]

제7조 [소집권자 및 소집절차]

제8조 [결의방법]

제9조 [부의사항]

제10조 [관계인의 의견청취]

제11조 [의사록]

제12조 [이사회와의 관계]

제4장 보 칙

제13조 [간사]

제14조 [운영규정]

부 칙

ESG 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2.03.08

개정 2023.12.21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위메이드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,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ESG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배경과 내용, 비용,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장 구성

제3조 (위원회의 구성)

- ① ESG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,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위원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5조 (워킹 그룹의 구성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 내에 워킹 그룹을 둘 수 있다.

- ② 워킹 그룹 그룹장은 ESG 세부 영역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고, 워킹 그룹 그룹원은 워킹 그룹의 그룹장이 지명한다.
- ③ 워킹 그룹장 선임 시 고려가 필요한 ESG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.
 - 1. 환경
 - 2. 인권
 - 3. 사회공헌
 - 4. 지배구조
 - 5. 정보보호
 - 6.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
- ④ 워킹 그룹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6조 (종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반기 1 회 개최한다.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회의일 2영업일 전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 - 2.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
 - 3. 준법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
 - 4. 주요 환경 이슈 및 환경경영 성과

5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 2.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
 3. 핵심 준법 리스크의 관리 등 준법통제에 관련된 중요 사항
 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의사록)

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 (간사)

위원회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4조 (운영규정)

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칙(2023.12.21)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03.08)

이 규정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